

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6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0.12.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서울창업허브 성수를 기 운영해 오던 서울산업진흥원(SBA)의 축적된 전문성 활용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바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재계약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

※ 서울창업허브 성수 혁신방안 수립 시 명칭 변경 (舊 성수IT종합센터) ('20.6.24.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6호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최초위탁(1차) : '11.2.14. ~ '12.12.31.
(서울산업진흥원,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)
- 재계약(2차) : '13.1.1. ~ '15.7.28. (서울산업진흥원)
- 재계약(3차) : '15.7.29. ~ '17.12.31. (서울산업진흥원)
- 재계약(4차) : '18.1.1. ~ '20.12.31. (서울산업진흥원)

다.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

- 서울산업진흥원은 '11.7월 개관 이래 성수 IT종합센터를 운영하며, IT 등 SW분야 창업보육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
- '17.6월 서울창업허브 개관 이후 이를 위탁 운영하며 구축한 국내·외 VC·AC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,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글로벌 진출 도모가 가능함
- 우수한 민간 투자 네트워크 보유로 후속 투자 유치가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총매출 및 신규 고용 확대가 예상됨
- '20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수탁기관으로 선정, 소관 창업지원시설 (서울창업허브 공덕·창동·성수)과의 연계로 체계적 스타트업 육성이 가능함

라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전반
-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
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-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, 관리, 홍보 및 교류·협력사업
 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-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
-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·연계 방안 추진
-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앱 테스트베드 운영

마. 민간위탁 개요

- 위 치 :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(성수 아크밸리)
- 건축규모 : 연면적 5,492㎡, 지상2층 ~ 4층
- 시설개관 : '11. 7월 (※ '20. 7월 '서울창업허브 성수' 재개관)
- 기 능 : 공간제공, 보육 프로그램 운영, 사업화 지원 등
- 보육규모 : 독립형 보육실 25실
- 소요예산 : 1,582백만원 ('21년 기준)
- 위탁기간 : 2021.1.1. ~ 2022.12.31. (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 (서울산업진흥원)

바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9조제2항

제9조(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)

-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편성

※ 작성자 : 투자창업과 동북권창업팀 신봉근 (☎2133-4882)